

대구예술대학교 창·취업지원센터 운영규정

(제정 2010.03.23. 교무위원회)

(개정 2019.06.20. 교무위원회/자구수정)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대구예술대학교(이하 “우리 대학교” 라 한다) 창·취업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업무) ① 본 센터는 학생들의 체계적인 진로상담과 효율적인 창업 및 취업활동을 지원하여 취업률을 향상함을 목적으로 한다.

② 본 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한다.

1. 창업지원에 관한 제반 업무
2. 진로 및 취업지원에 관한 제반 업무
3. 진로·취업 관련 프로그램 운영 업무
4. 진로·취업 상담 관련 업무
5. 여대생커리어개발에 관한 제반 업무
6. 기타 진로 및 취업 관련 업무

제3조 (센터장) ① 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③ 센터장은 창·취업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.

제4조 (운영위원회) ① 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은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에서 심의한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.

③ 위원은 창·취업지원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,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
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.

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5조 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심의한다.

1. 창업지원 사업의 기획 및 조정
2. 진로취업지원 사업의 기획 및 조정
3. 진로취업지원 정책의 논의
4. 규정 개폐에 관한 사항
5. 여대생커리어개발 계획에 관한 사항
6.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6조 (위원회의 사무) 위원회의 사무는 창·취업지원센터에서 관장하며, 간사는 취업지원팀장이 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.